

공고 제 1 호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9월 03일

효문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고 *원	고 *원 2000-01-02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(명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9-03